



상호업무협력 협약서

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경남지역의 돌발·외래병해충 발생예찰 및 방제 등 관리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상호 협력 하기로 합의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 사이의 상호 업무협력을 통하여 농업분야의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협력 범위) 양 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농업병해충 학술 및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
2. 돌발 및 외래병해충의 공동예찰과 방제, 공동연구와 조사
3. 농업인 대상 병해충 발생정보 전파로 병해충 방제 및 관리대책 수립
4. 실험·연구 장비 등 양 기관 보유시설의 상호 이용
5. 주기적인 업무교류 및 회의, 간담회 개최
6. 기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등

제3조(비용부담)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으로 취득한 내용 또는 정보 중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 다만 외부 공개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양 기관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며, 제6조에 의거 협약 해지에 관한 일방의 요구가 없는 한, 그 효력은 지속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)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그 밖의 사항) 그 밖에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6월 13일



농림축산검역본부
영남지역본부

본부장 조재호

조재호



경상남도농업기술원

원장 최복경

최복경